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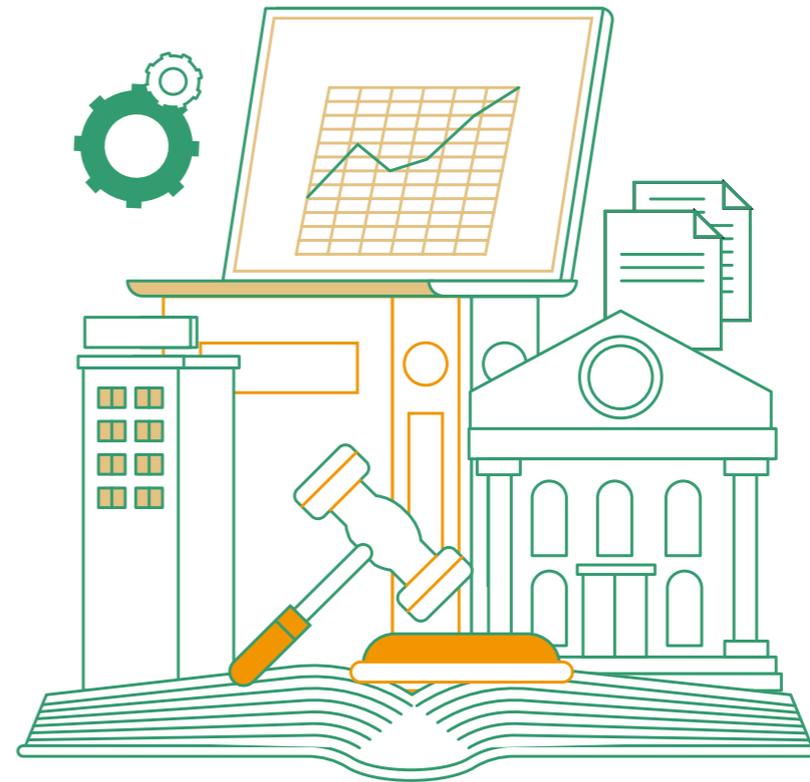
김해정책 BRIEF

김해정책 BRIEF

2025 - 9호
2025. 12.

문화영향평가제도 현안 진단 및 대응 과제 - 김해시를 중심으로 -

최진훈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연구위원
(hoon@ghri.re.kr)



GIMHAE

- I. 연구 개요
- II. 문화영향평가 제도 이해
- III. 문화영향평가 제도 동향 및 쟁점
- IV.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현황
- V.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향후 과제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25년 문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금년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년도부터는 공표 예정인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새롭게 재편될 예정임
- 이러한 흐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문화 분야 중장기 비전(문화한국 2035)을 발표하며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확대'를 핵심과제로 제시함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명확해진 평가대상 및 환류체계와 평가 전담·수행기관(광역 또는 권역 등)을 지정하며 문화영향평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차년도 「문화기본법(개정)」 시행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앞서 김해시의 문화영향평가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인 대응 과제를 제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연구 주요내용

- 문화영향평가 제도 동향
-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현황
-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3. 기대효과

- 문화영향평가 제도 활용한 김해시 법·계획·정책(사업) 추진 및 발전 초석 마련
- 문화영향평가 제도 대응 방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신뢰성 있는 근거로 활용

II. 문화영향평가 제도 이해

1. 문화영향평가 목적 및 근거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 중인 제도임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 및 정책(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가 사회로 확산될 수 있게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이를 위해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다양한 계획 및 정책(사업)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문화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계획 및 정책(사업)이 수립·시행될 수 있게끔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함
 - 결국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문화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문화적 권리 및 가치 보호 등)을 확대·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문화적 권리 및 가치 파괴 등)을 방지·완화함으로써 해당 계획 및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초점임

[그림 1] 문화영향평가 목적



자료)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누리집)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2. 문화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들은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가 시행을 규정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③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통해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됨

3. 문화영향평가 사업유형 및 인센티브

- 문화영향평가의 대표적인 사업유형은 ①법령·조례, ②기본·종합·중장기 계획, ③문화도시 사업, ④문화특화지역 사업, ⑤문화재생 사업, ⑥도시재생 사업, ⑦시설건립·조성 사업, ⑧마을 재생·공동체 사업, ⑨문화유산·문화유산교육 사업, ⑩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⑪기타 사업으로 구분됨
- 그중에서도 일부 사업유형의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거나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은 계획 수립 전 문화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의 확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 선정 가점은 물론 컨설팅, 참여담당자 인센티브 등 문화영향평가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4. 평가유형

- 문화영향평가의 유형은 진단평가, 약식평가, 전문평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됨
 - 진단평가는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전문가 검토위원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약식평가는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현장평가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위원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문평가는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계획 및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특히 전문평가는 평가대상의 성격 및 특성, 평가 목적 및 주안점, 평가 규모 및 층위 등의 심도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기본-단계별 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략평가)이 차등 적용되어 실시됨

[표 1]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평가유형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간	평가자
진단 평가	계획·정책에 대한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의 자체 진단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자체평가서 작성·제출 → 전문가 검토위원 검토 결과 작성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평가 결과 반영계획 제출 	약 1-2개월 소요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약식 평가	계획·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약식평가서 작성·제출 → 전문가 평가위원 현장평가 및 평가 결과 작성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평가 결과 반영계획 제출 	약 2-3개월 소요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평가위원
전문 평가	종합 혹은 새로운 계획·정책에 대한 제3의 전문기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3의 평가 전문기관 공모·선정 → 평가수행기관 평가 추진 및 평가 결과 작성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평가 결과 반영계획 제출 	약 3-7개월 소요	제3의 평가 전문 수행기관

자료)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누리집)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5.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3대 평가영역인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을 중심으로 6개 평가지표인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국가유산,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 공통지표임
- 특성화지표의 경우에는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대상과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유연하게 개발·적용하며, 이는 주로 전문평가에서 활용됨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표는 문화향유권(국민·주민의 문화생활 및 향유 권리)과 문화 접근권(국민·주민의 문화시설·공간 및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접근 권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평가함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표는 문화표현권(국민·주민의 주체적·능동적 문화예술 표현 기회 및 참여 활동)와 정책참여권(계획·시행 시 주민 및 예술인 등 유관 당사자 의견 반영)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평가함
 -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표는 국가유산보호(고유 국가유산의 기본적인 가치 보호)와 국가유산향유권(국가유산 향유 권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평가함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표는 지역공동체(지역 정체성 및 고유 문화 공유·형성)와 사회통합(사회구성원 사이의 소통·교류·협력 및 신뢰·유대감 형성)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평가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표는 문화다양성 권리(소수자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기회 보장)와 문화적 획일화 방지(문화적 획일화 및 독점 방지)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평가함
 -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표는 창의성발전(사회구성원의 창의성 발전 및 창의인재·조직의 유입)과 미래지향성(새로운 사회 변화·혁신 및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평가함

[표 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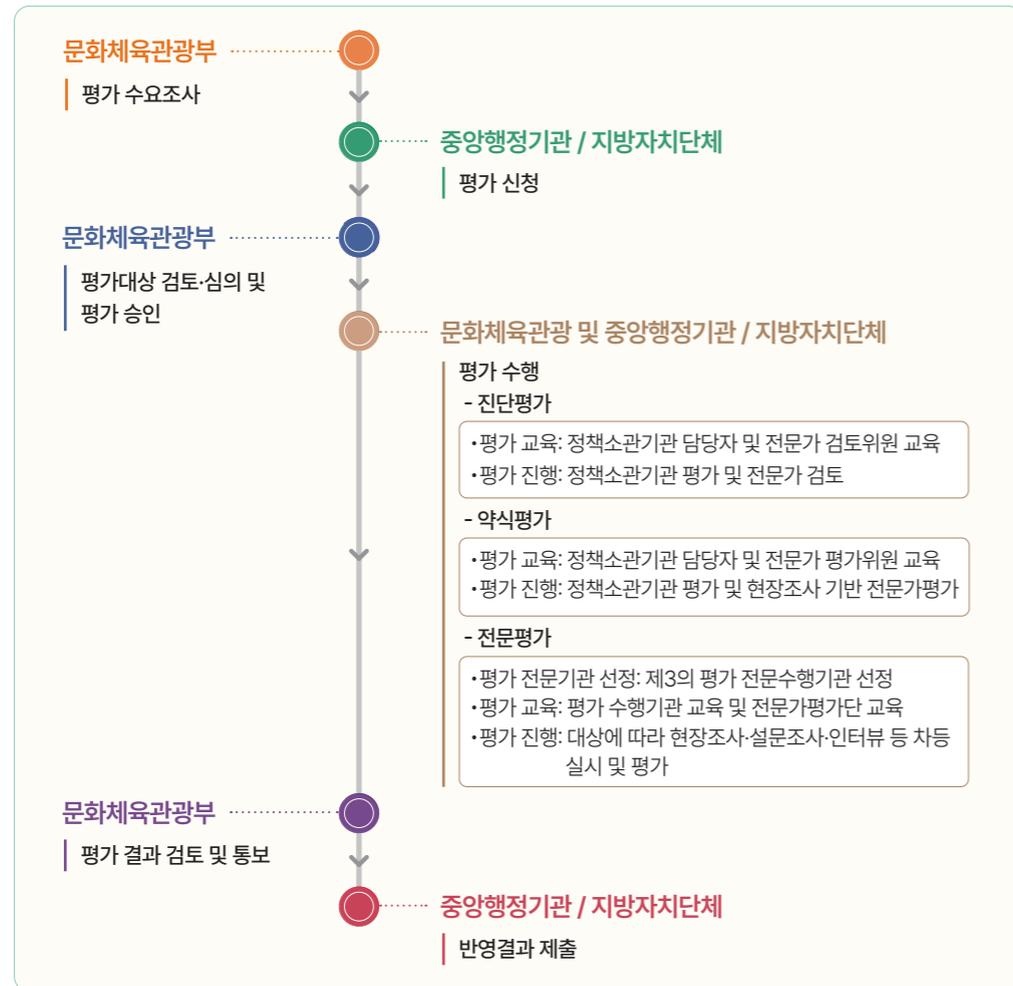
공통 지표	평가영역 (3개)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평가지표 (6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 지표	세부지표 (12개)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문화표현권 ·정책참여권	·국가유산보호 ·국가유산향유권	·지역공동체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권리 ·문화적 획일화 방지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대상 및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적용							

자료)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누리집)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6. 문화영향평가 평가절차

- 문화영향평가는 수요조사(평가 신청 및 대상 검토·심의) 후 평가가 진행(사전 교육, 평가 운영)되며,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통보하면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식으로 환류가 이루어짐
 - 지금까지는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반영)는 필수 의무가 아니었으나, 금년도 「문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평가의 환류 의무가 강화됨

[그림 2] 문화영향평가 평가절차(요약)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 문화로 읽고 읽고 있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III. 문화영향평가 제도 동향 및 쟁점

1. 문화영향평가 제도 동향: 문화기본법 개정

-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문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짐
 - 김면·이경진·김윤경(2020)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전담·수행기관 지정, 문화영향평가법(가칭)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김연진·김윤경(2022)에서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확대, 환류 체계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김연진·연수현·박혜련(2023)에서는 문화영향평가제 강화를 위한 환류에 초점을 두고 법제화, 결과 반영 및 이행점검,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제안함
- 이와 함께 정부 및 국회도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년간 다양한 개정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을 기울임
 - 2018년 정부는 「문화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대상 유형화, 결과 제출 등을 개선하려 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
 - 21대 국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 평가 대상, 평가 수행기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임기만으로 폐기됨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4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차 발의되었고, 법안 심의에 따라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되어 2025년 마침내 문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안이 담긴 「문화기본법」이 새로 개정·공포됨
- 특히 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 환류 의무화와 수행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안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 「문화기본법」 제9조의2에서는 문화영향평가 결과 활용 등 환류에 관한 사안을 담고 있고, 제9조의3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제9조의4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안을 담고 있음

[표 3] 문화영향평가 개정 법령_문화기본법

개정 법령	주요 내용
제9조의2 (문화영향평가 결과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항의 검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항 검토 후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②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 가능하게 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④ 평가 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게 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문화기본법」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2. 문화영향평가 개편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행령 개정(안) 제안

- 「문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성우 외, 2025)은 법률 위임사항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함
-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평가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수행·전담기관 신규 지정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첫째,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령 개정(안)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김
 - 구체적으로는 ①5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②대규모 예산사업(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 심사 대상 사업 등), ③기존 문화영향평가 대상(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 및 지역 발전 관련 계획 및 사업(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등), ④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주요 추진 계획 및 정책이 평가 대상임

- 다만,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과도한 규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에, 이와 관련된 사안은 문화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둘째, '환류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법령 개정(안)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히 문화영향평가 평가결과서와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결과를 제출할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함
- 셋째, '평가 수행·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수행기관과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안을 새로이 규정됨
 - 문화영향평가평가 수행기관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정(지정 요건, 방법, 기간 등) 및 지정 취소, 업무(평가 실시·운영, 계획·실적 제출 등) 등에 관한 사안을 명시함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지정 요건, 방법, 기간 등), 처분기준(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안을 명시함

[표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시행령 개정 제안(안)

구분	개정 법령	주요 내용
평가 대상	제2조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 선정 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1.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제7호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 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등 지역 발전 관련 계획 및 사업 4. 그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요하게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
	제2조의2 (문화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유형, 평가지표 등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환류	제2조의3 (문화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년도 문화영향평가서 및 이를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구분	개정 법령	주요 내용
평가 수행 / 전담 기관 지정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 기관을 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문화 분야 정책연구 및 학술업무 수행 경력, 사업계획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업무수행체계 보유 현황 및 운영계획 등)을 고려해야 함 ②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함 ③ 평가 수행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④ 평가 수행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함 ⑤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평가 실시, 평가서 작성, 평가결과 반영 등의 자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⑥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등의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⑧ 평가 수행기관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음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이나 지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제9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문화기본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정부 정책과 관련된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3. 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⑤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함 ⑥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자료) 이성우·김소연·남궁윤영(2025), 문화영향평가 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6~123p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3.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핵심과제: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 한편, 이러한 법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비전 2035 공개포럼」과 「문화 분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미래 문화 중장기 비전인 '문화한국 2035'를 제시하며 3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를 공표함
- 여기서는 그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결과 반영의 의무가 불명확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평가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평가 수행 및 연구를 병행하여 전담하기에는 평가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과제에서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세 가지 단위사업인 제도적 확산, 지원체계 정비, 환류 및 컨설팅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표함
 - '제도적 확산'의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법정계획,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지역개발 사업 등 문화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주요 평가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대상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함
 - '지원체계 정비'의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평가 수행기관과 평가 전담기관의 역할을 분리하여 평가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평가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유형별 평가 지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환류 및 컨설팅'의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사후컨설팅 도입(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 추진 단계에서 해당 정책(사업)에 문화적인 요소를 적용할 방안 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함
- 특별히 컨설팅 사업은 2025년 현재 신규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년도부터는 평가가 완료된 10건 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4. 문화영향평가 제도 동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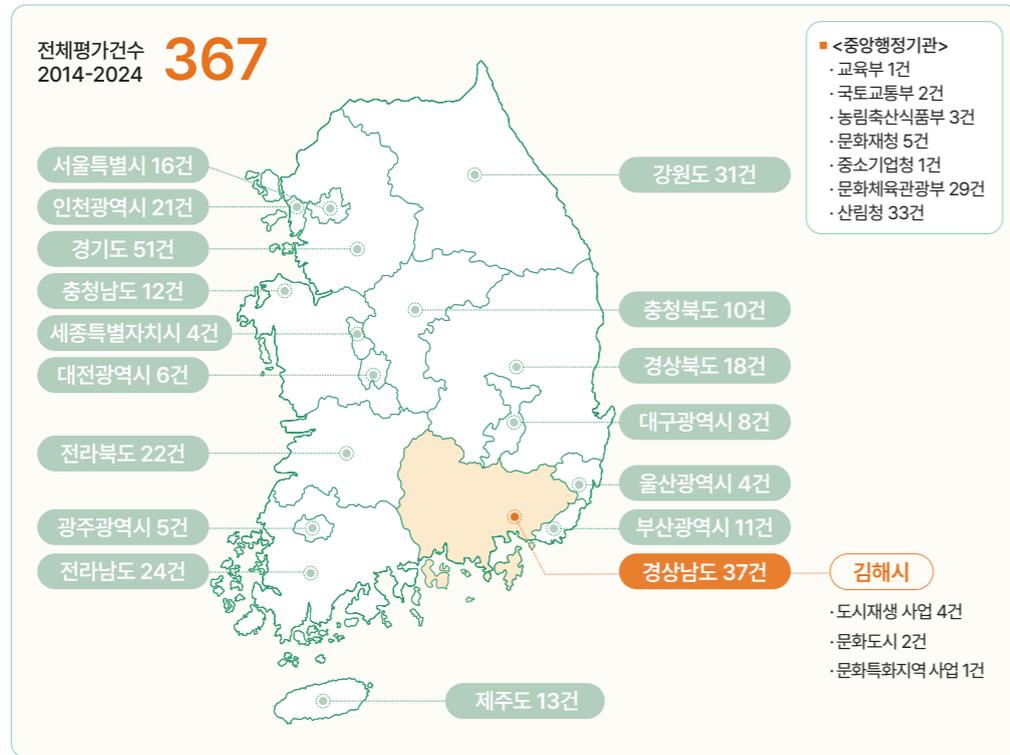
- 이처럼 금년도 개정된 「문화기본법」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언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향후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 운영 체계(평가 대상 규정, 환류 체계 강화, 평가 수행·전담기관 등) 전반을 대폭 개편할 전망이다
-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법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개편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그에 따른 법제적·정책적 전략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사실상 미진한 상황임
- 이에 김해시는 그간 참여한 문화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제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야 될 시점임

IV.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현황

1.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문화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래로 2024년까지 총 367건의 평가가 이루어짐
 - 이는 2014년부터 2년간 시행된 시범평가와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된 문화영향평가를 포함한 건수로, 2014년 4건에 불과했던 평가가 2024년 60개에 이를 정도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확장세가 커지고 있음
- 이를 문화영향평가 참여 현황을 참여 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0.2%(74건), 지방자치단체는 79.8%(293건)의 평가가 이루어짐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37건, 강원도 31건, 전라남도 24건, 전라북도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문화영향평가 현황



자료)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https://cupact.mcst.go.kr/>) 내 평가 현황 안내 (검색일: 2025.12.16.)

- 김해시는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7건의 평가에 참여함
 - 김해시 참여 현황을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평가가 5건 약식평가가 2건을 수행하였고, 사업유형별로는 도시재생 사업 4건, 문화도시 2건, 문화특화지역 사업 1건을 수행함
- 다만, 문화특화지역 사업의 경우 추후 문화도시 사업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김해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문화영향평가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점)이 부여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데에 기인함
- 특히 김해시는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포함한 문화도시 사업 3건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연이어 받았는데, 이는 결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성과와 우수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김해시는 2018년 문화특화지역 사업인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평가(심층)에 참여한 데 이어, 2020년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약식평가를 실시하면서 2021년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결실을 맺음
 - 아울러 2022년 동사업에 대한 전문평가(기본단계별)에 연이어 참여함으로써 2년(2023년, 2024년) 연속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된 성과를 이끌어내며 김해시 문화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해 옴
- 이는 그간 김해시가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김해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추진하여 김해시 문화예술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우수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목적에 부합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표 5]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참여 현황

연도	평가유형	사업유형	사업명
2017년 (1건)	전문평가	도시재생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사업: 김해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18년 (2건)	전문평가	도시재생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계획: 무계동 일원
	전문평가	문화특화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2019년 (2건)	전문평가	도시재생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내외동 일원
	약식평가	도시재생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불암동 불암장어마을 일원
2020년 (1건)	약식평가	문화도시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2022년 (1건)	전문평가	문화도시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11-22p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2.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법제 현황

▪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문화영향평가 자치법규(조례)나 관련 조문을 두어 지방자치단체형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중 별도의 문화영향평가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총 6곳으로, 2018년 경기도, 2019년 전라남도, 2020년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 2021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임
- 지방자치단체 중 자치법규에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조문으로 다룬 경우는 총 9곳으로 2014년 전북특별자치도, 2015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년 서울특별시, 2018년 춘천시, 2019년 성남시, 2020년 부산광역시(2건)와 전라남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임

[표 6]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법제 현황

구분	연도	지자체	사업명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문화영향평가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2018	광역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2019	광역시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0	광역시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0	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1	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1	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문화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조문에 있는 경우	2014	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5	기초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광역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2018	기초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9	기초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20	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2020	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2020	광역시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2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의 문화영향평가 관련 자치법규를 정리한 바임(검색일: 2025.12.16.)

3.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현황 진단

- 이처럼 김해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며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와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끝으로 현재까지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는 김해시가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물론, 도시·교통, 시설 건립·조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지속적·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
- 특히나 최근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강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점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문화영향평가 개편에 대응하여 김해 시정에 이를 적절·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김해시는 현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조문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아직까지 김해시를 포함한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나 관련 조문을 둔 경우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임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분야 중장기 핵심과제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확대를 공표하였고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개편이 예고된 만큼, 김해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제적 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V.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향후 과제

1. 문화영향평가 제도 관심 및 개편 동향 모니터링 필요성

- 최근 국회 및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앞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확대·강화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분명하게 표명함
- 이에 따라 올해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이 병행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김해시는 먼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김해 시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아울러 김해시는 「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동향과 문화영향평가 제도 개편 계획 및 방향을 모니터링하여, 법제 개편에 따른 법제적·정책적·행정적 대응 전략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김해 시정 및 주요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및 보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관계자(정책담당자, 연구자, 전문가 등)와의 소통·교류 등 다방면의 복수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접근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음

2. 문화영향평가 관련 자치법규 검토 필요성

- 「문화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문화영향 평가를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도록(제5조제5항)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 시행 권한과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6곳의 지방자치단체(경기, 전남, 충북, 대구, 광주, 전북)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9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두어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함
- 하지만 현재까지 김해시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연혁이 길지 않고 평가 제도가 체계화되는 중이기에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가 낮은 편임
-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수행기관(현재 광역별, 권역별 등 검토 중임)을 두어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활성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김해시 차원에서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올해 김해연구원이 주최한 「2025년 김해문화예술정책포럼」에서는 '문화영향평가 기반 김해 문화예술정책 활용 방향 및 방안'이 논의됨
- 이를 발표한 문화영향평가 사업책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박사)은 기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조례 및 활용사례를 예로 들며, 김해시 행정 비전의 실현과 시장 공약 및 주요 정책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김해형 문화영향평가 지표 등 김해시 맞춤형 문화영향평가 활용 방안을 제언함
 - 여기서 김해시에 특성화된 평가영역인 '김해발전'과 그에 따른 평가지표 '혁신성장(지역혁신성장, 주민혁신성장)' 및 '행복포용(주민행복추구, 포용도시)'을 함께 제언한 점은 주목할만함
- 이에 향후 김해시는 문화영향평가 관련법 개정 및 개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김해시 시정 및 주요 정책(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3.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논의 활성화 필요성

- 김해시는 그간 문화영향평가에 7차례 참여하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거나 우수 문화도시로 두 차례 선정되는 등 평가 제도를 활용한 여러 성과와 결실을 이끌어 내었지만, 김해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나 논의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임
- 물론 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하기도 함
- 하지만 금년도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평가 대상 확대, 환류 의무화, 수행·전담기관 지정 등 평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그간 김해시가 축적해 온 문화영향평가 참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연구와 논의를 개진해 간다면, 향후 문화영향평가를 활용한 법, 계획, 정책(사업) 추진의 실증적 근거와 효용성 있는 기초 역량 및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음
- 이에 우선적으로는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제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거나 과거 김해시 문화영향평가 참여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효용성을 입증하는 등의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김해시에 적합·특화된 맞춤형 문화영향평가 활용 전략 및 방안을 모색·고안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문을 두는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김해시 특성을 고려한 '(가칭)김해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는 물론 나아가 김해시 자체 '(가칭)김해형 문화영향평가 제도' 수립·추진하기 위한 연구 등도 지속성·연속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김해시는 물론 관계 기관(중앙·광역·지자체 연구원, 대학 등)이 소통·협력하며 관련 정보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소통 채널이나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음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기본법」, 법률 제20836호.
 김면·이경진·김윤경(2020),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김윤경(2022),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연수현·박혜련(2023), 문화영향평가 환류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해연구원(2025), 2025년 김해문화예술정책포럼 발표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 문화로 읽고 엮고 있다.
 이성우·김소연·남궁윤영(2025), 문화영향평가 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4), 2024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5.12.16.
 문화영향평가 홈페이지, <https://cupact.mcst.go.kr/>, 검색일: 2025.12.16.

김해정책 BRIEF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김재원

집필자 최진훈 김해연구원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연구위원

발행처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연락처 (055) 344-7700

편집 디자인 북

- 김해연구원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해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